

1. 개정이유

현행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은 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 및 시장·군수 등이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,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하여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,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 이에 보행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행교통 개선지표 일부 항목을 보행교통 저해 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 개정(안 제9조제2항)

기존 지표 중 정량적 조사가 곤란하거나 보행환경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사항은 삭제하되, 보행자가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이동성, 안전성, 쾌적성 외에 연결성 항목을 추가하고, 보행환경 개선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 중 “차량속도”를 “보도 횡단경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, 대중교통 정보제공”을 “보행로 이용수단 다양성, 차량속도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제3호”를 “제4호”로 한다.

4. 보행환경의 연결성 개선에 관한 사항: 보행로 연결수준, 보행자 통행방해 수준 등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) ① (생략)	제9조(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: 보행안전시설 확보, 가로등 조명수준, <u>차량속도</u> 등	2. ----- ----- ----- <u>보도 횡단경사</u> ----- ---
3.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: 보행시설물 유지보수, <u>보행공간</u> 소음 및 매연, <u>대중교통 정보제공</u> 등	3. ----- ----- -- <u>보행로 이용수단 다양성, 차량속도</u> -----
<신설>	4. <u>보행환경의 연결성</u> 개선에 관한 사항: <u>보행로 연결수준, 보행자 통행방해 수준</u> 등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	5. ----- <u>제4호</u> ----- ----- --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